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2월 16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장규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취약계층 노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기관의 의무사항과 급식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조치 의무화 및 정기적인 위생·안전 교육 실시를 법제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건강한 노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급식수행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함(안 제6조, 제8조)
- 2) 급식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신설)
- 3) 급식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조치 의무화를 규정함(안 제8조제1항)
- 4) 급식기관에 대한 위생·안전 교육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제2항 신설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노인 급식 기관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리 및 급식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신설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제공을 위한 근거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#### 2) 주요 내용

가) 급식수행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함(안 제6조, 제8조).

- 운영자를 급식기관으로 명칭을 명확히 함

나) 급식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신설).

-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의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노인 급식 제공 의무
- 급식기관은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출 것
- 급식장소의 안전점검, 철저한 위생관리,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
- 급식기관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

다) 급식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조치 의무화를 규정함(안 제8조제1항).

라) 급식기관에 대한 위생·안전 교육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제2항 신설).

#### 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노인 급식기관의 운영상 필요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신뢰받는 급식시설로 지역사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